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6.11 (목 10:3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민경환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6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추가 함으로써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,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신설 등(안 제2조 ~ 안 제3조)

나. 일부 미비한 조항의 정비 등(안 제5조, 안 제9조, 안 제12 ~ 안 제14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, 안 제27조 ~ 안 제28조, 안 제30조, 안 제34조)

다.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 등(안 제29조의2, 안 제32조)

라.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의 변경(안 제33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환경을 무형인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도내로 유치되는 서비스업종이 도민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유발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